

[붙임 2]

신종족메시아 완료(인증) 지침

‘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세계기준’이란 세계본부 최종의 단계이다. 즉, 종적으로는 430 대까지 조상축복식을 완료하고, 횡적으로는 신종족메시아의 종족원 430 가정 전원이 7 가지 조건(교육, 축복헌금, 성주식, 축도, 탕감봉, 40 일성별, 3 일행사)을 완료하고 정식구가 되어 입적축복식까지 마친 기준을 말한다.

‘신종족메시아 완료(인증)’이란 종적으로는 430 대까지 조상축복식을 완료하고, 횡적으로는 430가정 종족원 숫자를 확보하여 축복을 시키고 그 중에 최소 43가정이 7가지 조건을 마친 가정을 말한다. 나머지 387 가정 종족원들도 7 가지 조건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전제한다.

※ 신종족메시아 완료(인증)의 종적 기준은 부부 8 줄기로 210 대 이상 조상축복식을 우선 끝낸 가정으로 하되, 천주청평수련원의 조상축복식 진행속도에 맞추어, 최종 430 대 조상축복식 완료를 향해 단계별로 상향 조정 해 나갈 것이다.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는 천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며,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가정에 한해 ‘신종족메시아 완료’로 인증한다.

1 신종족메시아 완료 기준: 종, 횡으로 430 대와 430 가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.

A. 종적 기준: 남편 4 줄기(직계, 모계, 부의모계, 모의모계), 아내 4 줄기((직계, 모계, 부의모계, 모의모계) 총 부부 8 줄기에 대한 430 대 조상축복 완료.

※ 430 대 조상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천주청평수련원의 기준을 따른다.

B. 횡적 기준: 3 대권으로 430 가정 이상의 믿음의 종족을 편성

B-1). 종족 편성 기준

B1-a. 1 대(종주): 천일국 헌법 및 천일국 법률로 규정된 혼동가정회장의 자격을 가진 축복가정.

B1-b. 2 대

① 믿음의 자녀 가정: 위의 1 대 축복가정이 전도한 축복가정

② 직계 가정: 위의 1 대 축복가정의 직계자녀 축복가정

B1-c. 3 대

① 믿음의 자녀 가정이 전도한 축복가정 및 축복을 받은 믿음의 자녀 가정의 직계자녀 가정

② 직계자녀 가정이 전도한 축복가정 및 축복을 받은 직계자녀 가정의 직계자녀 가정(손자 손녀 가정)

B-2) 전도 기준: “참부모님이 임명한” 권역총회장(이하 ‘총회장’) 및 “국가단위 교회본부”(천법 81 조, 이하 국가본부)의 지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
B2-a. 입회 문서: 총회장 및 국가본부에서 규정된 입회원서에 사인을

하고 “천일국 국민”(천법 19 조)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결의를 한다.

B2-b. 신앙 출발: 총회장 및 국가본부에서 규정된 신앙 출발 기준을 충족한다.

B-3) 축복 기준: 신종족메시아 완료가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7 가지 조건을 완료한 가정이다. 430 가정 전체 종족원 중 최소 43 가정이 7 가지 조건(교육, 축복헌금, 성주식, 축도, 탕감봉, 40 일성별, 3 일행사)을 완료한 기준을 이뤄야 한다.

B3-a. 교육

B3-a-① 원리교육: 기본적인 원리강의를 통해서 “하나님”(천법 1 조)과 “하나님과 인간”(천법 2 조)의 관계를 이해한다.

B3-a-② 참부모님 생애노정: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강의를 통해서 “참부모님”(천법 4 조)에 대한 이해를 한다.

B3-a-③ 축복의 의의와 가치: 혈통전환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축복가정으로서 “인류의 구세주·메시아인 참부모님에 의한 축복결혼을 통해 원죄(原罪)를 청산하고 중생된 부부”(천법 26 조)가 됨을 결의한다.

B3-b. 축복헌금: 세계기준으로 규정된 축복감사헌금을 참부모님께 봉헌한다.

B3-c. 성주식: 성주식의 그 의의와 가치를 알고 성주식을 행한다.

B3-d. 축도: 축도는 참부모님만이 “권한”(천법 7 조)을 가진다. 다만, 독신 및 기성가정의 경우 참부모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총회장 및 국가본부가 임명한 “현직 목회자”가 축도권을 갖는다.

B3-e. 탕감봉: 공직자가 주관하는 자리에서 탕감봉식을 한다.

B3-f. 40 일성별: 40 일 기간 성별생활을 한다.

B3-g. 3 일행사: 참부모님의 전통에 따라 3 일행사를 한다.

B-4) 신앙생활 기준: 아래와 같이 헌금 생활 또는 예배 참석을 통해서 천일국 국민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지향한다.

B4-a. 헌금 생활: 최소 6 개월에 한번은 소속 교회 또는 소속혼동가정회의 “혼동가정회장”(천법 20 조)이 소속된 교회에 헌금을 한다.

B4-b. 예배 참석: 최소 6 개월에 한번은 소속 교회의 예배 또는 소속 혼동 가정회 모임에 참석을 한다.

C. 행정

C-1) 신종족메시아 신규 완료가정은 소속된 국가의 국가회장, 대륙회장, 총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승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)

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축복감사헌금 납부 영수증 ②430 가정 종족원 명단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.

C-2) 최종 총회장의 사인을 받아 승인된 신종족메시아 완료가정은 매월

세계본부에 접수시키고, 그 접수된 서류를 심사 및 계수하여 매년 기원절
참부모님께 상신, 시상한다.